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7개 통·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 7명 증원(안 별표)
 - 당초 : 642개 통·리장(통장 470, 리장 172)
 - 변경 : 649개 통·리장(통장 473, 리장 176)
 - 고아읍 3, 산동면 1, 공단1동 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7개 통·리 증설에 따른 고아읍 3명, 산동면 1명, 공단1동 3명의 통·리장 7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